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④

지난호에 이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을 계속 심는다.
이 내용은 하이텔로 제공되는 국세청세무정보를 토대로
본 편집부에서 정리, 게재하는 것이다.

영수증이란? 그리고 왜 주고 받아야 하나?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주고받는 증표에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시 주고받는 것에는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갈음되는 신용카드 매출표, 승차권 등이 있다.

이중 영수증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거래의 증표이며 사업상 내부관리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수증 금액안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주고받아 우리가 낸 세금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특히,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나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영수증 또는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갈음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신용카드 매출증가분의 표준소득률도 50% 경감하여 세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또한 보관된 감사테이프는 장부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온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므로 그만큼 더 유리하다. 그러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사업자로 선정돼 여러가지 세무간섭을 받게 되며 금전등록기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때에는 사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봉사료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면 절세 가능

봉사료, 팁 등 업소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부가가치세 등 세금계산서 그 금액을 넣지 않게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금전등록기의 면세분류키인 3번 또는 0번을 사용하여 구분 표시하면 된다).

사업규모가 커지면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영체사업자 즉 과세특례자가 사업이 커지게 되면 더이상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과세특례자인 경우와 달리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예정신고시 정부세액고지 제도가 없어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이점

흔히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2%에서 10%로 인상돼 세금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의무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주고받는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계절적 상품을 일시에 많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도 받는다.

사업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이 유리

규모가 커진 사업을 개인사업 형태로 영위할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혼동되기 쉬워 합리적인 기업경영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정확한 재무회계 처리로 절세면에 유리하다.

- 과세특례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만 제출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 1월1일~6월20일 과세특례 포기신고

→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

- 7월1일~7월21일 과세특례 포기신고

→ 다음해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이상이 되면 법에 의해 일반과세자가 된다. 한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무서에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 받는다. [21]

표 1)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구분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기
· 연간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이상)	다음해 7.1일부터 일반 과세자
· 1.1~6.30사이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30까지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3,600만원 이상인 때	다음해 1.1일부터 일반과세자
· 7.1~12.31사이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3,600만원 이상인 때	다음해 7.1일부터 일반과세자

참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전환되기 20일전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해준다.